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 설명서

문화로 인사합시다!

•손에 잡히는 문화선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은 기업들의 바람직한 접대문화 정착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 설명서

문화로 인사합시다!

•손에 잡히는 문화선물•



메세나(MECENAT)란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설립되어 현재 22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상호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mecenat.or.kr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및 전시 입장권, 도서나 음반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에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세법상 소비성 경비로 간주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그 지출성격상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및 견본비 등과 유사하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판별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비용들과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일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가 초과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회계상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개념은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회계상으로는 모두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현행 세법은 건전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일정 한도 내의 금액 만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이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향응 접대이다. 이로 인해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기업업무추진비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를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른 한도를 정하고 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용도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비용

구분	대상	업무관련성	손비 인정
기업업무추진비	특정인	있음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기부금	특정인	없음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일반 소비자)	있음	전액 인정
복리후생비	내부 직원	있음	전액 인정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업무추진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손금산업'이라고 하고, 성격에 맞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이다. 기본한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1,2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이다. 수입금액별 한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여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적용하였다.

2023년까지 '접대비'라 불리던 이 계정과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접대비라는 명칭은 1968년 관련 법 제정 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용어는 변경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의 실체적 범위는 접대비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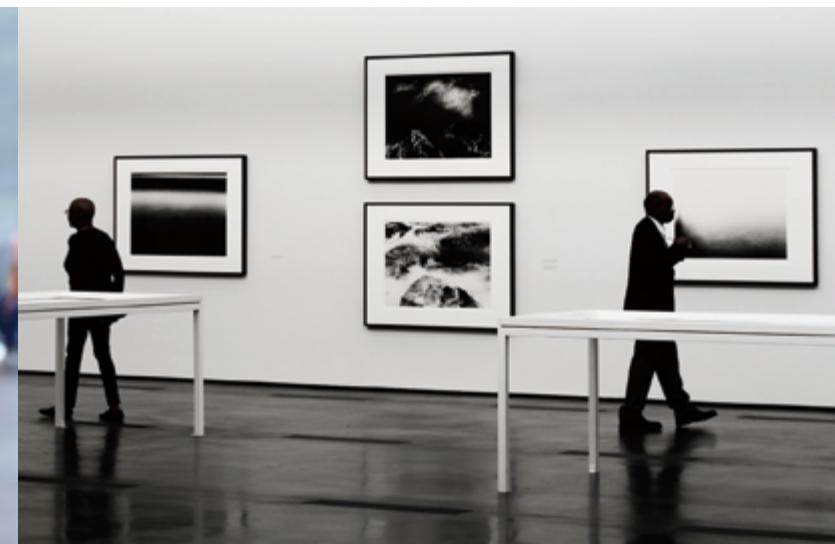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문화기업업무추진비란 기업이 고객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 음반,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선물하는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말합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정책으로 문화비를 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는 매출액 대비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상품 구매를 통해 기업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기업의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화를 활용한 접대는 거래처에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퇴근 후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향응성 접대 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직장생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1석 3조가 아닐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들의 바람직한 접대문화 정착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다. 기업들이 문화접대를 통해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문화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문화경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예술소비를 통해 문화예술계를 간접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예술계의 상생을 도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히스토리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꾸준히 개정을 거듭하며 추가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고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턱을 낮춰왔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대상 금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으며, 손금 한도 역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까지 손금 인정이었던 부분이 20%로 확대된 바 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도 제도 도입 초기 공연, 전시 입장권에 국한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등록문화재 입장권, 문화예술 강연료, 기획행사 행사비 등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갔으며 2019년 미술품 구입을 통한 접대도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테마파크 입장료·이용권,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케이블카, 모노레일 티켓 구입도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범위에 포함되었다.

 대상 금액 조정	2007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총 접대비 금액의 <u>3%</u> 초과 시 손금산입 적용 2011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총 접대비 금액의 <u>1%</u> 초과 시 손금산입 적용 2014년 제한조건 폐지
 손금 한도 확대	2007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u>10%</u> 까지 추가 손금 인정 2016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u>20%</u> 까지 추가 손금 인정
 적용 범위 확대	2010년 문화관광축제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혹은 이용권 구입 2012년 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등 2015년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강연료 등 2016년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는 행사비 2019년 미술품 구입(취득기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 원 이하) 식사·주류 포함된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2023년 테마파크, 수목원, 정원 등의 입장권 구입, 케이블카, 모노레일 티켓의 구입

※ 2024년 법인세 개정으로 인하여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으나, 위 표에서는 법 개정 이전 시점의 명칭인 ‘접대비’로 표기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인정 범위 및 활용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인정 범위는 상당히 넓고 다양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에 근거하여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오른쪽과 같다.

‘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공연, 전시 혹은 박물관의 입장권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적용 항목이다. 또한 영화, 영상 DVD,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등 문화 산업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관광공연장, 등록문화재 입장료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강연료, 기업 자체 비용을 들여 기획하는 문화예술 행사 등도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미술품 소비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구입을 통한 선물까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 가능하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인정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 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12.02.02 신설, 2020.05.26 개정)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 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2015.02.03 신설)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2016.02.05 신설)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2016.02.05. 신설)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 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 (2019.02.12 신설)
14.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2023.06.07 신설)
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2023.06.07 신설)
16. 「궤도운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2023.06.07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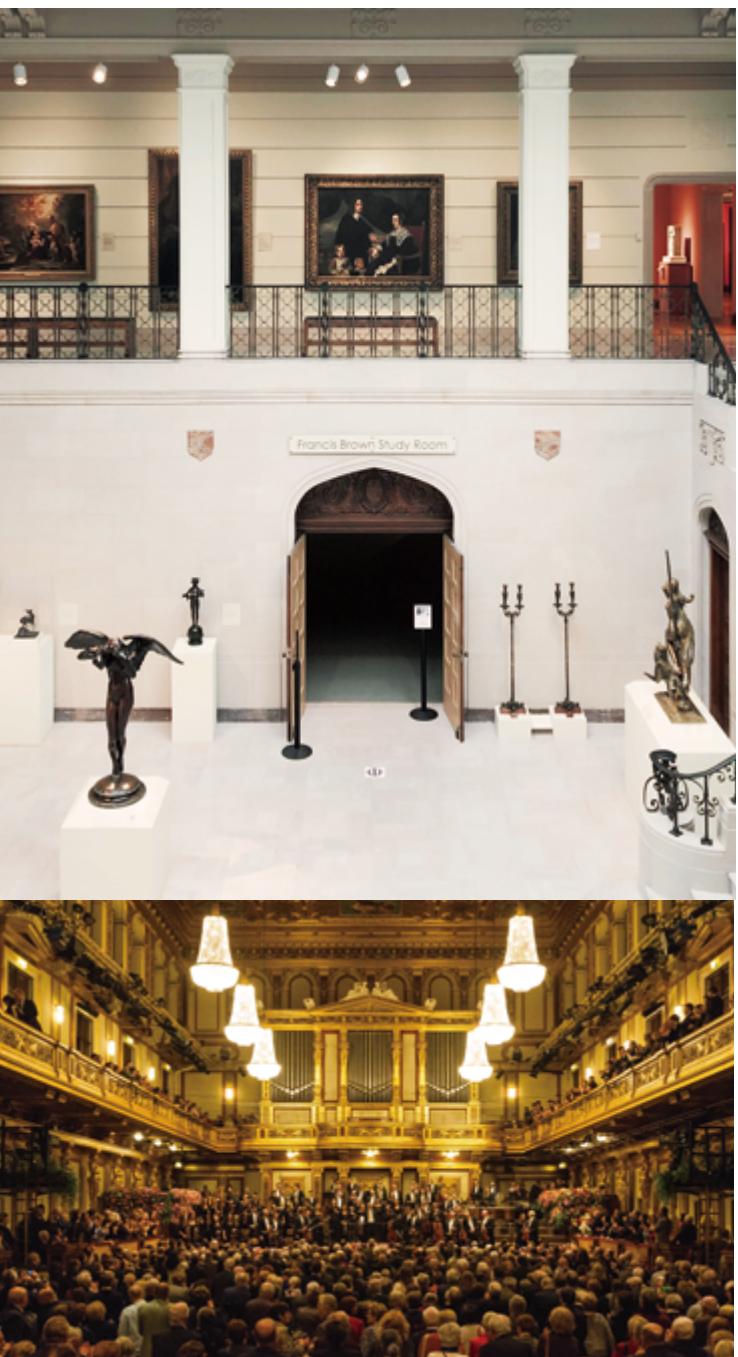
※ 국외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 관람권을 선물하거나, 공연장의 좌석을 예약하여 거래처를 초청하거나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 공연을 직접 개최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선물하거나,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정규 개장 외 시간에 거래처를 초청,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글쓰기, 합창, 연극 활용 팀워크 강화, DSLR 사진 촬영법, 클래식 강의 등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강연을 거래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도서나 간행물을 통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처리를 할 경우 상품권과 전자 출판물 이용권도 도서 및 간행물에 해당된다. 단, 도서 이외의 용도(문구류 구매 등)로 사용되는 상품권은 문화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

음반이나 영상 제작물, 음원사이트 이용권을 구매해 선물할 수도 있으며, 영화 관람권을 구입하여 고객이나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영화관을 대관하여 거래처를 초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영화 예매만 가능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할 수도 있다. 문화관광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축제 현장에 직접 초청하는 것 역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문화선물의 효과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만큼,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법인세 감면 효과’이다.

워라밸 시대,
문화선물로 직원들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선물의 효과 1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활용하면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까지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만큼,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법인세 감면 효과’이다.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가 1억 원인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기업이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인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총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되는 것이다. 손금 산입이 되는 금액이 증가된다는 것은 법인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상대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더 의미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빈도나 매출액 대비 기업업무추진비 비중이 높고, 세무상 정해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세무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채워졌다 하더라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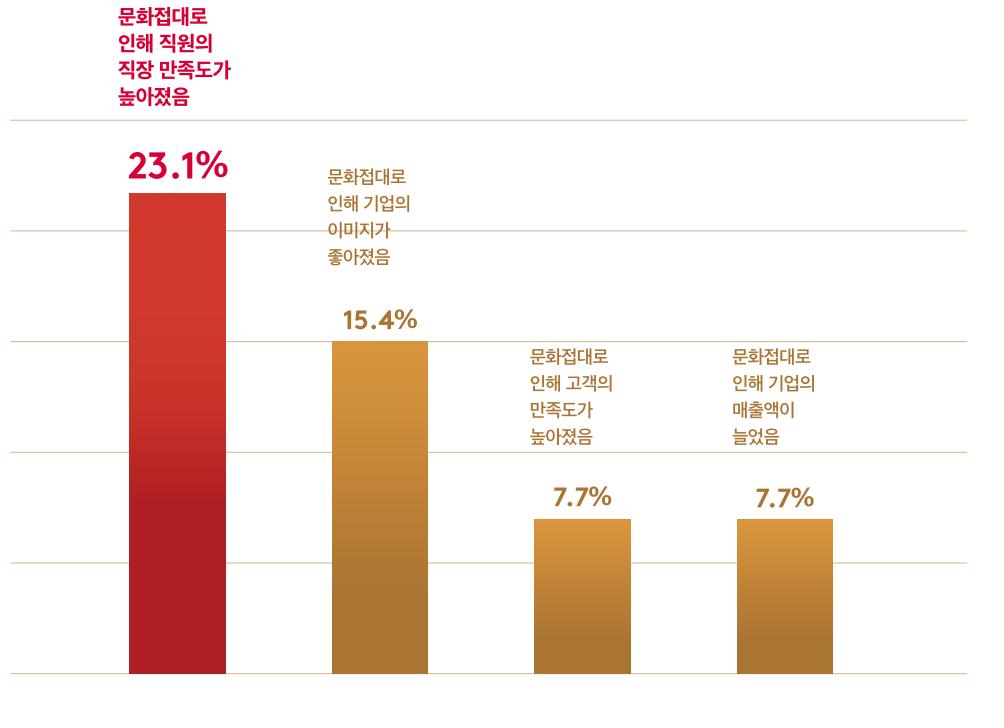
예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1억 2천만 원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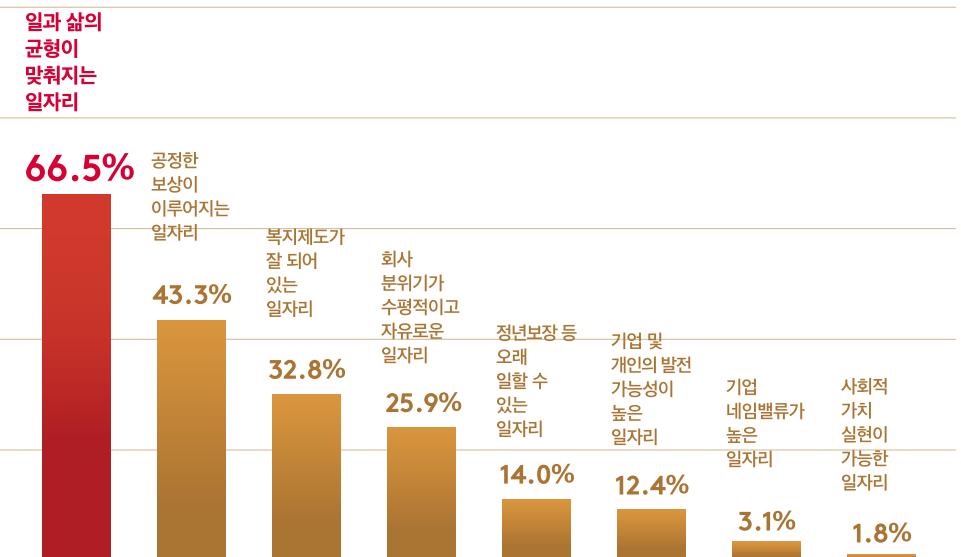
문화선물의 효과 2

문화로 인사하면 임직원이 행복해 집니다.

문화상품을 통한 접대를 실제로 실행해 본 기업 임직원들은 문화접대가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진행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결과 문화접대를 통해 변화된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문화접대로 인해 직원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문화를 활용한 접대는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문화접대는 접대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접대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접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전국 20~39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라는 응답이 66.5%로 나타났다. 기업은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하 워라밸)’을 그 어떤 업무조건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술과 유흥으로 점철되는 접대나 영업활동이 워라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력 유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기업의 경우 기업경영 전략에서 임직원의 워라밸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문화접대는 향응성 접대의 감소로 이어져 임직원들의 워라밸 확보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접대 방식이다.



문화선물의 효과 3

문화선물은 고객분들께 기업에 대한 특별한 기억과 인상을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선물의 힘은 단순히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았다는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이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는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이어진다. 문화체험이라는 특별한 기억으로 인해 두 기업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티켓 구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 티켓을 구매해 고객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신 고객분들이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명연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면서 기존 음주·유흥접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히스보험증개 한만영 대표이사



공연 기획

평소 당사에 도움을 많이 주는 협력업체와 현장에서 일하는 고마운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음악회 공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후 함께한 분들이 “마음속 깊이 설렘과 감동을 받았고, 좋은 공연을 관람하고 갈 수 있어 참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전해 왔습니다.

다진 이형경 대표이사



강연 기획

공연이나 강좌가 있을 때마다 초청장이 와서 부담 없이 참석 하곤 했습니다. 로얄아운지에서 열린 인테리어 강의는 시장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이 됐고, 시장조사 차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들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두 회사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얄앤파니의 협력사 범한공업 관계자



도서 증정

더성도는 거래처에 희망의 메세지를 담은 자필편지를 동봉한 책을 선물합니다. 더성도의 오랜 전통입니다. 명절에도 다른 선물 없이 책이나 음반을 선물하는 게 문화산업(인쇄산업)에 종사하는 회사 정체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20년 간 책 선물을 했더니 이제는 고객들이 다음 책을 기다릴 정도입니다.

더성도 김상래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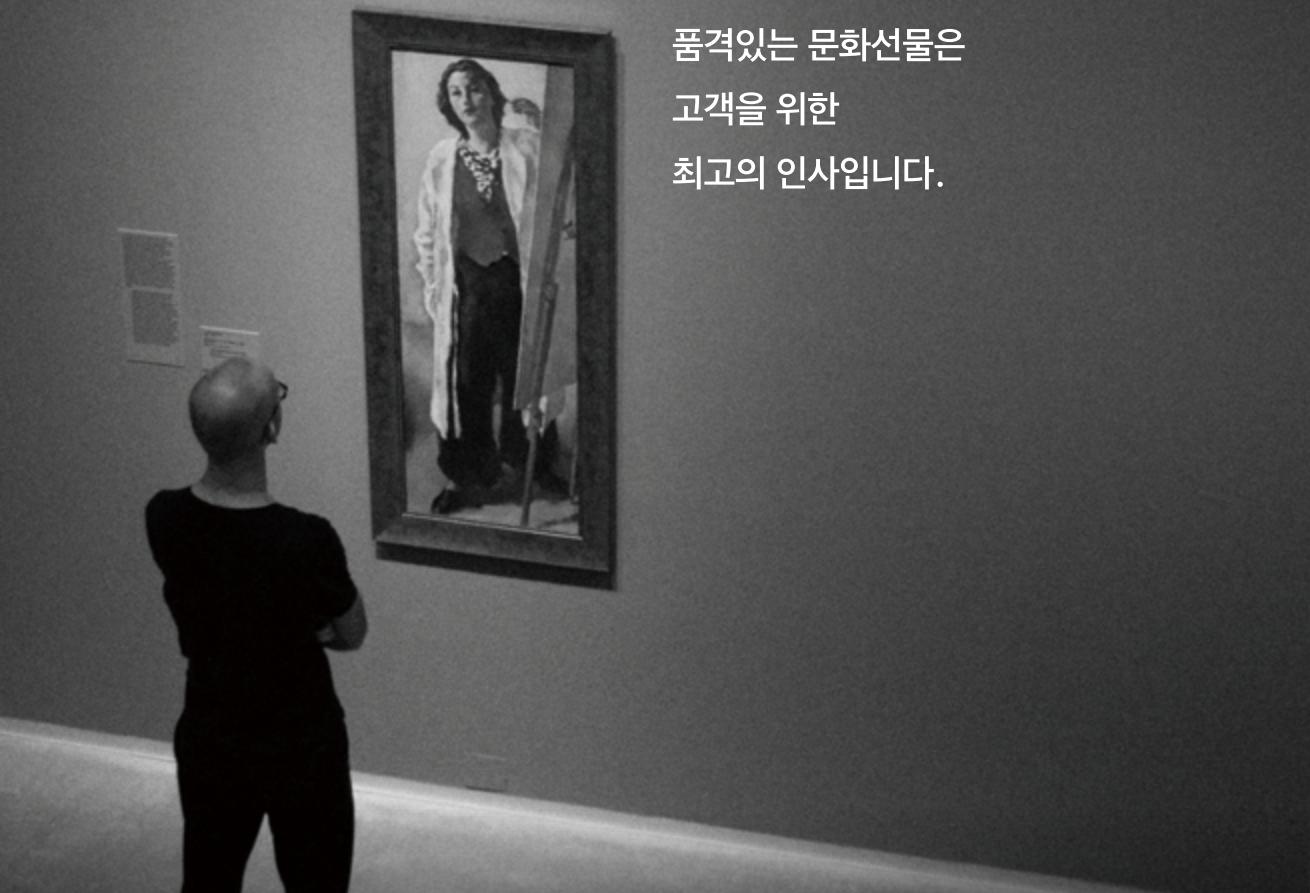


음반 증정

2007년부터 예술단체 ‘행복나무플러스’의 송년음악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0년 간의 공연 프로그램 중 관객 호응이 높았던 곡들을 선별해 음반을 제작, 고객사와 VIP 인사 등에 선물했습니다. HK와 협력업체, 고객사들 모두 차운 금속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모두가 음악을 향유하며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선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HK 계명재 회장

문화선물 활용실전



품격있는 문화선물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인사입니다.

문화선물을 활용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필수요소는 기업 내 회계 시스템 상에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세목계정을 추가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현황 및 회계 처리 방법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은 전체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의 0.1% 수준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사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세청이 신고된 기업업무추진비 총액과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2020년 신고된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11.7조 원에 달하지만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고 총액은 105억 원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총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고 총액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체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0.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신고액이 현격히 낮아졌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홍보마케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고 총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한몫 하고 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고 현황 (단위 : 억 원/출처 : 국세통계연보)
— 기업업무추진비 총액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총액

연도별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고금액은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다. 기업이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란에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국세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법인 중 상당수가 법인세 신고 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고금액이 전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대비 0.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법인세 절감 효과를 위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세목계정 추가 필수

따라서 문화선물을 활용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필수요소는 기업 내 회계 시스템 상에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세목계정을 추가하고 비용처리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업무추진비 계정 안에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분리된 세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세목계정만 추가 등록한다면 연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집계가 용이해 진다. 회계 프로그램 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부 계정으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지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의 시작이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회계 프로그램에 등록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을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 서식 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고는 완료된다.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서식

■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2023.03.20 개정)			(일본)
사업 연도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금 액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신입액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⑤+⑦)	
문화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한법」 제136 조제3항)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와 ⑩×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⑪-⑩)	
		⑬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⑪과 ⑫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지지 80g/m ² 또는 중질지 80g/m ²]			

손쉬운

문화선물

문화선물은 어렵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진행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결과, 문화접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를 진행하는 기업의 61.5%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식사, 선물 위주의 일반 접대와 달리 문화접대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중 고객이 만족할 만한 장르를 선택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연예술 유형의 입장권을 제공할 경우 고객이 공연장에 방문할 수 있는 날짜, 시간까지 맞추어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객의 취향을 잘못 파악할 경우 오히려 불쾌감을 줄 위험성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처 :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Base: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기업, N=81, 단위: 명, 중복응답

문화를 선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문화예매권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문화예매권을 활용한다면 문화선물을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인 인터파크와 함께 기획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문화예매권은 인터파크에 등록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이다. 문화예매권을 활용하면 고객의 취향이나 일정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손쉽게 문화를 선물할 수 있다.

TIP.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추진에 상품권을 활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 문의 : 한국메세나협회 A&B팀 02-784-0952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 설명서
문화로 인사합시다!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발행일	2023 . 12
발행인	김희근
편집	Arts & Business팀 02-784-0952
감수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
디자인	청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대표번호	02-761-3101~2
웹사이트	www.mecenat.or.kr

CULTURE